

**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(NFSC 203)**

[시행 2019. 5. 24.] [소방청고시 제2019-35호, 2019. 5. 24., 일부개정.]



소방청(화재예방과), 044-205-7456

**제7조(감지기)**

②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계단·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
2. 복도(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)
3. 엘리베이터 승강로(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)·린넨슈트·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
4.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
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·숙박·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
  - 가. 공동주택·오피스텔·숙박시설·노유자시설·수련시설
  - 나.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
  - 다. 의료시설,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·조산원
  - 라. 교정 및 군사시설
  - 마.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

⑦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·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그 장소에 적용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,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별표 1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.

[별표 2]

설치장소별 감지기 적용성 (제7조제7항 관련)

설치장소	적용장소	적용열감지기					적용연기감지기					불꽃감지기	비고	
		차동식스포트형	차동식분포형	보상식스포트형	정온식	열아날로그식	이온화식스포트형	광전식스포트형	이온아날로그식스포트형	광전아날로그식스포트형	광전식분리형			광전아날로그식분리형
2. 취침시설로 사용하는 장소	호텔 객실, 여관, 수면실 등						◎	◎	◎	◎	○	○		

- 주) 1. “○”는 당해 설치장소에 적용하는 것을 표시  
 2. “◎” 당해 설치장소에 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지회로에 축적기능을 갖는 것을 표시